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을 “나”목 내지 “라”목으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환경보건정책보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